

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안

□ 제정이유

-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법에서 위임한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차등 적용 (안 제2조)
-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.(안 제3조)
-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함. (안 제6조)

□ 검토내용

1) 조례 제정의 타당성

- 동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5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 타당하며

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

-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당해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(개정 94. 12. 23, 97. 9. 11, 99. 3. 12), (본조 신설 93. 12. 28)

2) 내용의 적정성

- 과태료의 부과기준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상한선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
타시군과 비교할 때(고양시·의정부시 60만원, 양주·김포·용인등 200만원) 과다한 면이 있음.

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

제33조의2(과태료)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·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
2.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 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
3.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자
6. 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·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, 동항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·징수한다.[개정 99. 2. 8]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리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

- 조례안 제2조제1항 관련한 별표의 위반 내용도 법(법 제4조제1항, 법 제21조의18 제1항)에서 위임한 범주내에서 정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국토이용관리법 제4조제1항, 제21조의18 제1항

제4조(타인토지의 출입)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·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축목·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

[개정 82. 12. 31, 93. 8. 5, 97.12.13 법5454]

제21조의18(토지의 이용의무등) 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.

- 참고로 그 동안 파주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